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36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이종배 · 권영진 · 안철수
곽규택 · 서명옥 · 김기웅
송석준 · 이소희 · 최은석
이만희 · 김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채무조정, 폐업비용 지원, 폐업 이후 진로 지원, 폐업절차 안내, 심리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그런데 폐업할 의사가 없지만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인해 폐업할 우려가 있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나 법률상 지원근거가 미비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금 이외의 채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채무조정 · 신용회복 지원 근거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

· 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여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70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 또는 폐업을 원하지 아니하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폐업 소상공인”을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한다.

4.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지원
5. 채무조정 · 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 ·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70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률 제2170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 ----- -----<u>(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 또는 폐업을 원하지 아니하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라 한다)</u>----- ----- -----. 1. ~ 3. (현행과 같음) 4. <u>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지원</u> 5. <u>채무조정 · 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 ·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u> 6. -----<u>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